

2006년 12월 29일 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6. 12. 27배포
- ▶ 총 3 쪽 (사진없음)

보도자료

- ▶ 산재보험과 박명순 사무관
T E L : 503-9761
E-MAIL : pms540@hanmail.net
F A X : 507-373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내년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(일액) 46,933원

- 올해대비 2.7% 인상

- 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·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,933원으로 올해 45,700원보다 2.7% 인상된다.
 - 이로 인해 장해·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('05년 기준 6만 6천여명)의 25.2%인 1만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.
 - 또한,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,220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약 2배 수준이다.
- ※ '05년 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월 평균임금은 2,404천원
-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·장해·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,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·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.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('07년 기준 일액 27,840원)이 적용된다.
-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「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·최저보상기준」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.

- 이와같은 최고·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·최저기준 금액, 간병료,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었다.
-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,176,020원, 최저금액이 7,867,410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는 올해와 비교하여 각각 3.3%, 4.5% 인상된 것이다.
-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58,670원(일액),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0,190원,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에는 38,240원이 각각 지급된다.
-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일액 38,240~25,490원이 지급 된다.

【 참 고 】

최고보상기준금액 등 고시 내역

(단위 : 원, %)

구 분	현 행	고 시 금 액	인 상 율	
최고보상기준금액(日)	155,360	157,220	1.2	
최저보상기준금액(日)	45,700	46,933	2.7	
장의비 최고금액	10,814,947	11,176,020	3.3	
장의비 최저금액	7,525,147	7,867,410	4.5	
간 병 료 (日)	간호사	53,880	58,670	8.9
	간호조무사	39,350	40,190	2.1
	전문교육과정 이수자	39,350	40,190	2.1
	가족·기타 간병인	37,420	38,240	2.2
간병급여 (日)	상시간병	37,420	38,240	2.2
	수시간병	24,940	25,490	2.2

※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

- 정신·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
- 두눈, 두팔,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

※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

- 정신·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호흡부장기기능 장애외의 장애가 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
- 두눈,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 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
-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서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
-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